

# 보 상 계 획 공 고

2022년 4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우리 사무소 시행 「국도20호선 청도 매전 하평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국도20호선 청도 매전 하평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하평리, 상평리)	비고
	편입지번(분할전지번)	
토지	하평리 : 230-6(230-1), 231-7(231-1), 234-8(234-7)	
	상평리 : 1046-2(1046), 1045-6(1045-3), 1045-7(1045-3), 1049-6(1049-6), 1050-9(1050-9), 1050-4(1050-4)	
총 9필지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물건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4. 사업개요 : 도로선형개량 L=360m
5. 시행기간 : 2021년 11월 26일 ~ 2023년 11월 15일
6. 사업구간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하평리, 상평리일원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청도군청 및,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홈페이지주소: <http://www.molit.go.kr/brocm/intro.do> →국토관리사무소(대구)→공지사항
8. 보상시기 : 2022년 6월중 감정평가 후 보상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자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와 토지소유자는 각각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하여야 합니다.(단,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
-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인감날인	전화번호	비고
			성명	주소			

※제출양식은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 하여야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  
(단,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열람기간 : 2022. 4. 11. ~ 2022. 4. 25.(15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6)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1길 54 ). 끝.